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광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16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이광희·정준호·이연희

김성환 • 고민정 • 이재관

민병덕 • 이강일 • 채현일

임호선 · 복기왕 · 김우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,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)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'12대 중과실 교통사고'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,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 · 유치원 · 초등학교의 시설,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.

이에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 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).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)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 - 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
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
 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 - 라.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・운영에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・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처벌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처벌의 특례) ① (생 략)	제3조(처벌의 특례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	2
중 업무상과실치상죄(業務上過	
失致傷罪) 또는 중과실치상죄	
(重過失致傷罪)와 「도로교통	
법」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	
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	
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(公	
訴)를 제기할 수 없다. 다만,	
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	
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	
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	
구호(救護)하는 등 「도로교통	
법」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	
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	
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	
겨 유기(遺棄)하고 도주한 경	
우, 같은 죄를 범하고 「도로교	
통법」 제44조제2항을 위반하	
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	
니한 경우(운전자가 채혈 측정	
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	

제외한다)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12. (생 략) <신 설>

- 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1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)에서 「도로교통법」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
 - <u>가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</u> 따른 유치원
 - <u>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8</u> <u>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</u> 학교 또는 특수학교
 - 다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 이집
 - 라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 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 안학교,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

따른 대안교육기관, 「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「경제자유구 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・운영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 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・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